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21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

2. 개정이유

-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보장하고
- 탄력적 예산집행 및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복무규정 일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제18조의2(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) 조항 신설
 - 시간외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직원은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24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복무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4월 20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한 석 현

